

#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월 18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보통신과장 권희춘)

#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,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변경함.(안 제8조제5호 신설)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“ 없 ”	“ 음 ”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부천시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9
의결 년월일	2007. 1.23

제안년월일: 2007년 1월 9 일

제안자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,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함.(안 제8조제5호 신설)

##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”를 “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”로 한다.

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정보화촉진기본법,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”을 “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, 「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제20조제2항중 “사무관리규정”을 “「사무관리규정」”으로 하며, 제22조중 “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”로 하고, 제23조제3항중 “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”을 “「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」”으로 하며, 제25조중 “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”을 “「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」”으로 하고, 제26조중 “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”을 “「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」”으로 하며,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“보안업무규정”을 각각 “「보안업무규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정보통신과
입안자	담당과장 권 희 춘
	담당팀장 이 승 표
	담당자 여길태(320-2874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</u></p> <p>제8조(협회의 기능)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</u></p> <p>제8조(협회의 기능)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